

제 호

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

1. 기 관 명:
2. 사업자등록번호:
3. 주 소:
4. 대 표 자:
5. 지정기간: 20 . . . ~ 20 . . .

「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」 제31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보건복지부장관

직인

